

이천시 통·리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

소관부서 : 행정지원과

제정 1996·3·1 규칙 제 66호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이천시 통·리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」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)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.

제2조(장학금의 신청)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(친권자, 부양 의무자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는 장학금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·면·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 (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) 1통
 2. 학교장의 추천서 [별지 제2호서식] 1통
 3. 서약서 [별지 제3호서식] 1통
-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

제3조(추천) 장학금신청서를 접수한 읍·면·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추천서 별지 제4호서식과 통·리장 신분확인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.

제4조(선발) ①시장은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읍·면·동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학교장과 읍·면·동장을 통하여 지급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.

③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.

제5조(장학금의 지급) 장학금의 지급은 시금고를 통하여 송금하고 지불통지는 학교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지하며,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천시 통·리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서식]

장 학 금 신 청 서

1. 보호자 인적사항

- 주 소 :
- 성 명 :
- 생년월일 : 년 월 일(당 세)
- 통리장경력 : 년 월 일부터
 년 월 일까지
 (년 월)
- 공적개요

2. 장학생 인적사항

- 학교명 :
- 학 년 :
- 성 명 : 한글 (남.여)
 한자
- 생년월일 : 년 월 일(당 세)
- 보호자와의 관계 :
- 성적 또는 특기개요

3. 가족상황

성 명	본인과의 관계	연 령	직 업	비 고

4. 보호자 재산상황

부 동 산	동 산	연 수 입	기 타	비 고

이천시 학년도 통·리장자녀장학금의 지급을 받고자 다음 서류를 갖추어 신청합니다.

1. 재직 또는 입학 학교장의 추천서 1통
2. 서약서 1통

 년 월 일
 신청인(보호자) 성명 (인)

(주) 1. 보호자는 친권자 또는 부양 의무자를 말함.
 2. 성적개요는 재직(입학)학년의 평균점과 석차를 기재함.

[별지 제2호서식]

장 학 생 추 천 서

1. 주 소 :
2. 학 교 명 :
3. 성 명 : 한글 (남.여)
한자
4. 생년월일

위 사람은 본 학교의 학생으로서 다음에 의하여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사료되어 이에 추천합니다.

성 적	품 행
1. 평 균	1. 종 교
2. 석 차	2. 사 상
3.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여부	3. 소 행
	4. 학 습 태 도

년 월 일

학교장 성명 (직 인)

[별지 제3호서식]

서 약 서

1. 주 소 :
2. 성 명 : (남.여) 생년월일
3. 학교명 : 학년 학과

본인은 이천시 년 통·리장 자녀 장학생이 된 영예를 명심하고 장학생에 대한 제반 규칙을 준수함은 물론 학업에 충실하고 타의 귀감이 되어 장차 조국의 발전에 이바지 할 것을 보호자와 연서로 이에 서약합니다.

년 월 일

장학생 성 명 (인)

보호자 성 명 (인)

